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4 선고 2021가단338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변 론 종 결 2021. 6. 3.

판 결 선 고 2021. 6. 24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,691,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10. 12.부터 피고 C은 2010. 11. 17.까지, 피고 D은 2010. 12. 15.까지 각 연 5%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상훈

별지